



뉴욕 재개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위한 필수 및 2단계 소매 사업 지침

본 지침은 2단계 혹은 **재개** 이후 단계를 시행하는 주 전역의 모든 매장 내 영업 필수 소매 사업체뿐만 아니라 주 전역의 모든 매장 내 필수 소매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 소매 사업 활동에 대한 코로나19 중간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General Retail Business Activities)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동안 모든 소매 사업체는 소매 활동과 관련된 모든 주정부 및 연방 의무사항의 최신 변경 내용을 운영에 적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물리적 거리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활동의 안전 또는 핵심 기능에 더 짧은 거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개인 간 6피트의 거리를 확보하십시오. ✓ 소매 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으로 직원 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인 관계 접촉 및 모임을 줄입니다. ✓ 근로자 및 고객의 인원은 점유 증명서에 의해 설정된 특정 지역에 대한 최대 점유 인원의 50 퍼센트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고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6 피트의 공간을 유지하고 모든 경우 허용되는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좁은 공간(엘리베이터, 소형 창고, 금전 등록기 뒤, 좁은 상품 진열로)에 함께 있는 경우에도 최대 수용 인원을 50 퍼센트 미만으로 유지하십시오. ✓ 테이블 또는 표지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 및 기타 적용 가능한 현장 영역(출근/퇴근 구역, 건강 선별 스테이션, 휴게실, 금전 등록기, 상품 진열로)에 사회적 거리두기 마커를 표시합니다. ✓ 중요하지 않은 대면 모임(회의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제한하십시오. ✓ 배송을 위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합니다. ✓ 탈의실에 손 세정제를 포함하여 직원 및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청소 및 소독 용품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셀프 서비스 바 및 샘플러를 포함한 편의시설을 폐쇄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을 위한 추가 공간을 만들어 현재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만 대기하도록 하고, 소매 영업 시간을 제한하여 긴 시간동안 직원 및 고객의 이동을 분산하며, 도착/출발 시간을 교대로 설정하고 A/B 팀을 분리합니다. ✓ 모든 방향에서 6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업 공간 및 직원 좌석 공간의 사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경우 OSHA 지침에 따라 공기 흐름, 냉온방 또는 환기가 원활한 구역에서 안면 마스크를 제공하고 착용을 요구하며 물리적 장벽(플라스틱 차단벽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좁은 통로, 복도 또는 공간에서 화살표가 표시된 테이블 또는 표지를 활용하여 소매 구역을 변경하고 양방향 이동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명확하게 지정된 별도의 출입구를 지정하십시오. ✓ 배송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자가 차량에 머물러 있도록 상품 배송을 위한 터치리스 배송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경우 최소한 페이스 커버를 포함한 배송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되는 보호 장비를 제공하십시오. ✓ 벌크빈 사용을 중단하여 상품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고객이 구매할 제품만 만지도록 유도하십시오. ✓ 클릭 앤 콜렉트, 배송 및 전화 쇼핑 등 고객에게 원격 쇼핑 대안을 제공하여, 시설 내 고객 수를 제한합니다. ✓ 가능하면 전화 또는 화상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만약 대면 모임이 필요하다면 참가자들 사이에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개방되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모든 사람이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좁은 공간(엘리베이터, 소형 창고, 금전 등록기 뒤, 좁은 상품 진열로)에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있어야 합니다.

STAY HOME.

STOP THE SPREAD.

SAVE LIVES.



뉴욕 재개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위한 필수 및 2단계 소매 사업 지침

본 지침은 2단계 혹은 **재개** 이후 단계를 시행하는 주 전역의 모든 매장 내 영업 필수 소매 사업체뿐만 아니라 주 전역의 모든 매장 내 필수 소매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 소매 사업 활동에 대한 코로나19 중간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General Retail Business Activities)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동안 모든 소매 사업체는 소매 활동과 관련된 모든 주정부 및 연방 의무사항의 최신 변경 내용을 운영에 적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물리적 거리두기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이 터치리스 결제 옵션을 사용하거나 선결제하도록 유도하십시오. ✓ 고객에게 구매 물품을 직접 포장하도록 권고합니다. ✓ 고객 사용 후 탈의실을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보호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주는 직원에게 무료로 허용 가능한 페이스 커버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교체용 커버를 적절히 제공해야 합니다. ✓ 허용되는 페이스 커버에는 작업 특성 상 더욱 엄격한 PPE(N95 인공 호흡기, 페이스 쉴드 등)이 요구되지 않는 한, 천 소재(수제 봉제, 퀵 컷, 두건) 및 의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페이스 커버는 사용 후 세척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 고용주는 적절한 페이스 커버를 포함하는 PPE를 적절하게 착용, 탈착, 세척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 계산대에서 직원은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야 하며 고용주는 반드시 공기 흐름, 난방, 냉각 또는 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플라스틱 차단벽과 같은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 물체(도구, 레지스터, 차량 등)의 공유를 제한하고 공유 표면을 만지지 않도록 하거나, 공유 물체 또는 접촉이 잦은 구역과 접촉할 때는 장갑(업무 관련 또는 의료용)을 착용하거나, 접촉 전후에 손을 소독하거나 씻으십시오. 	

STAY HOME.

STOP THE SPREAD.

SAVE LIVES.



뉴욕 재개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위한 필수 및 2단계 소매 사업 지침

본 지침은 2단계 혹은 **재개** 이후 단계를 시행하는 주 전역의 모든 매장 내 영업 필수 소매 사업체뿐만 아니라 주 전역의 모든 매장 내 필수 소매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 소매 사업 활동에 대한 코로나19 중간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General Retail Business Activities)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동안 모든 소매 사업체는 소매 활동과 관련된 모든 주정부 및 연방 의무사항의 최신 변경 내용을 운영에 적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위생, 청소 및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및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의 위생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날짜, 시간 및 청소 범위를 기록한 청소 일지를 현장에 유지하십시오. ✓ 비누, 물 및 종이 타올로 손을 씻는 것 또는 손 씻기를 실행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알코올을 60 퍼센트 이상 함유한 알코올 기반 손소독제를 포함하여 근무지에 손 위생 스테이션을 제공 및 유지합니다. ✓ 직원들이 자주 접촉하는 공유 표면을 사용하기 전후에 청소 및 소독 용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 후 손 위생 조치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 식품 취급 전 과정에서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상품 물품의 이송(트럭 운송 등) 전후 손 위생 조치를 취합니다. ✓ 최소 근무 시프트 변경 후, 매일, 혹은 필요하다면 더욱 자주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공유 물품(레지스터 등) 및 표면을 포함하여 결제 장비, 픽업 구역, 화장실, 공용 구역 등 사람의 이동이 잦은 구역은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코로나19에 효과적이라고 인증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제품을 사용하여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합니다. ✓ 청소 및 소독 제품이나 청소 및 소독 행위가 안전 상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소재나 기기를 손상하는 경우, 직원은 사용 중 손 위생 스테이션을 사용 및/또는 일회용 장갑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 음식 및 음료의 공유를 금지합니다(뷔페 스타일 식사). ✓ 손소독제는 직원 및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점 전체에 배치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품된 물품의 수령, 세척, 소독, 재판매 계획을 세우거나 직원 및 고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합니다. ✓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품된 상품을 세척 및 소독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안전 예방 조치를 유지하면서 실외 공기로 환기합니다(창문 및 문 열기). ✓ 직원이 집에서 점심을 가져 오도록 권장하고 직원이 식사를 하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STAY HOME.

STOP THE SPREAD.

SAVE LIVES.



뉴욕 재개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위한 필수 및 2단계 소매 사업 지침

본 지침은 2단계 혹은 **재개** 이후 단계를 시행하는 주 전역의 모든 매장 내 영업 필수 소매 사업체뿐만 아니라 주 전역의 모든 매장 내 필수 소매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 소매 사업 활동에 대한 코로나19 중간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General Retail Business Activities)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동안 모든 소매 사업체는 소매 활동과 관련된 모든 주정부 및 연방 의무사항의 최신 변경 내용을 운영에 적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가 지정한 업계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이행할 것임을 보증해야 합니다. ✓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하도록 직원 및 고객에게 상기시키도록 소매점 내부 및 외부에 표지판을 게시하십시오. ✓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프로토콜을 교육하고 안전 지침을 자주 전달합니다. ✓ 현장에 완성된 안전 계획을 눈에 띄게 게시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 미디어, 구두 커뮤니케이션 및 표지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페이스 커버 사용을 권장하십시오. ✓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관된 수단으로 직원, 방문자 및 고객을 위한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합니다.
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픈 직원은 직장에서 병에 걸렸다면 즉시 자택으로 돌아가 자택에 머물러야 합니다. ✓ 업무 개시 전 직원 및 필수적인 방문자(고객 제외)에게 필수 건강 선별 검사(설문지, 체온 검사 등)를 진행하며, (1) 지난 14일간의 코로나19 증상, (2) 지난 14일간 코로나19 검사 양성 결과 및/또는 (3) 지난 14일간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사례와의 근접 또는 밀접한 접촉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평가 응답은 매일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검토는 문서화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근무지에 들어갈 수 없으며 진단 및 검사를 받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는 지침을 받고 자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만약 근무지에서 접촉한 근로자, 방문자, 고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직원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나 확진 판정을 받은 시점 중 더욱 이른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소매점에 입장한 근로자, 방문자 및/또는 고객(알려진 경우) 등 잠재적 접촉자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 접촉자 추적 노력에 협력하는 한편, 주 및 연방 법과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에 통보하기 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원격 선별(전화 또는 전자적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 적절한 PPE나 비접촉 수단을 통해 실시하는 배송 및 고객을 제외하고 직장 또는 지역의 다른 개인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직원 및 방문자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 직원과 근접 또는 밀접 접촉을 한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경우 프로토콜과 정책에 대해서는 DOH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필요한 경우 접촉자 추적을 위해 기록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보건 선별 설문지를 작성하고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십시오. ✓ 직원이 근무 시간 이외를 포함하여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즉시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청하십시오. ✓ 선별자는 CDC, DOH 및 OSHA 프로토콜을 숙지한 고용주가 임명한 사람이 진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소한 페이스 커버를 포함하여 고용주가 제공한 적절한 PPE를 착용해야 합니다.

STAY HOME.

STOP THE SPREAD.

SAVE LIVES.



뉴욕 재개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위한 필수 및 2단계 소매 사업 지침

본 지침은 2단계 혹은 **재개** 이후 단계를 시행하는 주 전역의 모든 매장 내 영업 필수 소매 사업체뿐만 아니라 주 전역의 모든 매장 내 필수 소매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 소매 사업 활동에 대한 코로나19 중간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General Retail Business Activities)을 참조하십시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동안 모든 소매 사업체는 소매 활동과 관련된 모든 주정부 및 연방 의무사항의 최신 변경 내용을 운영에 적용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기존의 적용 가능한 지역, 주, 연방의 법, 규정, 기준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필수	권장 모범 사례
선별(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합니다. ✓ 사업 안전 계획의 준수 책임을 담당할 현장 안전 관리자를 지정합니다. ✓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노출된 구역의 청소 및 소독을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청소 및 소독은 최소한 모든 수송 구역을 포함한 자주 접촉하는 표면(화장실, 손잡이 등)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STAY HOME.

STOP THE SPREAD.

SAVE LIVES.